

[별표] <신설 2015.9.25.>

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세부기준(제13조제1항 관련)

시험 시행·결과에 대한 영향 및 과실 여부 행위 유형	행위를 고의로 한 경우	행위가 과실로 인 한 것이고 시험의 시행 또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 한 경우	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이고 시험의 시행 또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
1. 시험에서의 부정 한 행위 가. 시험 시작 전 문제 열람 등 원장이 정하는 경미한 부정행위 나. 가목 외의 부 정행위	그 시험의 무효 및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 격 정지 그 시험의 무효 및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	그 시험의 무효 및 1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 격 정지 그 시험의 무효 및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 격 정지	그 시험의 무효 또는 그 시험과목의 무효 그 시험의 무효
2. 응시원서 등에 응 시자격에 관한 사 항을 거짓으로 적 은 행위	그 시험의 무효 및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 정지	그 시험의 무효 및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의 응시자 격 정지	그 시험의 무효
비고 원장은 부정행위자등의 행위가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시험에 미친 영향, 행 위의 유형, 부정행위자등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 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.			